



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의안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주현

#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호
- 제 출 자 : 금산군수
- 제 출 일 : 2026. 3. 5.
- 회 부 일 : 2026. 3. 17.

## 2. 제안이유

-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옥외영업장 영업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옥외 조리·제조 가능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예산조치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1612)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1636)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4412)

- 입법예고(2026. 1. 30. ~ 2026. 2. 19.) : 제출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1일당 8시간 이내인 24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옥외영업장 영업을 금지하고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조리, 제조 가능지역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례를 약 60여개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됨.